

제주지방법원 2023. 6. 16 선고 2021가단5768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현 담당변호사 최호웅, 김수진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형섭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양은석

변 론 종 결 2023. 4. 28.

판 결 선 고 2023. 6.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20. 3. 19.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등기와 2020. 5. 4. 접수 제4244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사실관계

가. 원고와 C 사이에 2012. 8. 8.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제1조(목적)

원고는 2012. 7. 15. 2,000만 원을 C에게 대여하고 C은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2012년 8월 15일부터 2014년 3월 15일까지 총20회에 걸쳐 매월 15일에 금 100만 원씩 각 각 변제한다.

제3조(이자)

이자는 연 2할의 비율로 정하고 그 지급방법은 매월 15일에 지급한다.

제5조(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에 대하여 연3할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제6조(기한이익의 상실)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권자로부터 달리 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당연히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

3. 채무자가 3회 이상 분할상환금 및 이자금의 지급을 지체한 때

나.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분할상환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2019. 5.부터 2019. 9.까지 5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씩 합계 250만 원을 변제하였다. 다. C의 부친인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20. 3. 19. 사망하였고, 공동상속인인 망인의 배우자 피고(상속분 3/7), 망인의 자녀 C, E(상속분 각 2/7)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이를 단독 소유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20. 5.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등기와 2020. 5. 4. 접수 제42441호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C에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대여금채권이 있다. C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피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C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는 C에게 도박자금을 대여한 것이어서 원고의 금전대여행위는 무효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는 C의 상속지분 가치를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하고 상속재산 분할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알지 못했고, 이 사건 부동산은 실제로는 피고 소유인데 부부 사이에서 명의신탁하였던 것을 회복한 것이다.

나.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는지

1) 관련 법리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한 때에는 그 대여약정은 민법 제103조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무효이고(대법원 1973. 5. 22. 선고 72다2249 판결 참조), 위와 같이 도박자금의 용도로 수수된 금원은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것이므로 민법 746조에 의하여 그 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대법원 1959. 8. 27. 선고 4291민상561 판결 참조).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4호증의 3의 기재, 증인 C,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C이 도박에 사용한다는 것을 알면서 C에게 돈을 빌려 주었고, 도박자금으로 빌려 준 대여금에 관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C에 대한 대여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그 대여금은 불법원인급여이므로 원고는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① 원고는 C에게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하여 100만 원씩, 200만 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금융거래내역 등 이를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원고는 2,000만 원에 이르는 대여금에 관해 그 대여시기, 대여금액, 대여명목에 대해서 구체적인 주장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② 증인 F은 '2012. 5.경 내지 6.경 처음 원고를 알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수회에 걸쳐 원고, C과 함께 바둑이 게임 등 도박을 하였다. 원고가 C으로부터 도박에 쓸 돈을 빌려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C에게 선이자 20%를 떼고 돈을 빌려주는 것, C은 그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두 번 정도 직접 보았다. C은 원고에게 빌린 돈을 거의 도박에만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증언하였다.

③ 증인 C은 '2012. 5.경 내지 6.경 도박을 하면서 원고를 알게 되었고, 원고와 함께 도박 장소에서 바둑이 게임 등 도박을 하면서 원고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선이자로 20%를 공제하고 합계 1000만 원 정도를 모두 현금으로 빌렸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④ G은 'C을 따라 도박을 하면서 원고를 알게 되었다. 도박을 할 때마다 거의 같이 있었는데, C은 도박을 하다 돈을 잃으면 원고가 항상 돈을 빌려주었고, 돈을 빌릴 때마다 이자를 주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⑤ 이 사건 공정증서가 2012. 8. 8. 작성되었으므로 원고가 C에게 돈을 대여한 시기는 그 이전 무렵이 될 것인데, 위와 같이 대부분 일치하는 F, C, G의 진술에 의하면 C은 2012. 5. 내지 6.경부터 원고로부터 도박자금을 차용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C의 채무는 원고에게 도박자금으로 빌린 대여금채무로 봄이 상당하다.

나) 따라서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보전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고진흥